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안상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8103

발의연월일 : 2008. 1. 21.

발 의 자 : 안상수·강길부·고경화
고조흥·고진화·고희선
고홍길·공성진·권경석
권영세·권오을·권철현
김광원·김기춘·김기현
김덕룡·김명주·김무성
김석준·김성조·김애실
김양수·김영덕·김영선
김영숙·김용갑·김재경
김재원·김정권·김정훈
김충환·김태환·김학송
김학원·김형오·김희정
나경원·남경필·맹형규
문 희·박계동·박근혜
박성범·박세환·박순자
박승환·박재완·박종근
박 진·박찬숙·박형준
박희태·배일도·서병수
서상기·송영선·신상진
심재엽·심재철·안경률
안명옥·강재섭·안택수
안홍준·엄호성·원희룡
유기준·유승민·유정복

윤건영 · 윤두환 · 이강두
이경재 · 이계경 · 이계진
이군현 · 이규택 · 이명규
이방호 · 이병석 · 이상득
이상배 · 이성구 · 이성권
이원복 · 이윤성 · 이인기
이재오 · 이재웅 · 이재창
이종구 · 이주영 · 이주호
이진구 · 이한구 · 이해봉
이혜훈 · 임인배 · 임태희
임해규 · 장윤석 · 전여옥
전재희 · 정갑윤 · 정두언
정몽준 · 정문헌 · 정병국
정의화 · 정종복 · 정진석
정진섭 · 정형근 · 정화원
정희수 · 주성영 · 주호영
진수희 · 진 영 · 차명진
최경환 · 최구식 · 최병국
한선교 · 허 천 · 허태열
홍문표 · 홍준표 · 황우여
황진하 의원(13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저출산·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저출산 · 고령사회위원회를 폐지하고 보건복지여성부장관이 그 기능을 수행하는

한편, 「정부조직법」의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추진체계에 관한”을 “추진에 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3장의 제목 “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”를 “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수립 및 추진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2항 전단 중 “보건복지부장관”을 “보건복지여성부장관”으로, “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”를 “국무회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보건복지부장관”을 “보건복지여성부장관”으로, “기획예산처장관”을 “기획재정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3항 중 “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, 보건복지부장관”을 “보건복지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고, 보건복지여성부장관”으로, “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”를 “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”로 한다.

제22조제2항 중 “보건복지부장관”을 “보건복지여성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26조 전단 중 “위원회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심의하기”를 “보건

복지여성부장관은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, 조정 및 평가하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0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 (목적)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 (목적) ---------- 추진에 필요한 ----------.
제3장 저출산 · 고령사회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	제3장 저출산 · 고령사회정책의 수립 및 추진
제20조(저출산 · 고령사회기본계획) ① (생 략)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,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 · 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.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	제20조(저출산 · 고령사회기본계획) ① (현행과 같음) ②보건복지여성부장관---------- 국무회의----------. ----------

	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에 대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	④보건복지여성부장관-------기획재정부장관----------.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제21조(연도별 시행계획) ①·② (생 략)	제21조(연도별 시행계획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	③---------- 보건복지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고, 보건복지여성부장관----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④·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
제22조(업무의 협조) ① (생 략)	제22조(업무의 협조) ① (현행과 같음)
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	②보건복지여성부장관-------

안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저출산·고령사회 관련 계획 및 정책,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	-----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23조(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)	<삭 제>
①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	
②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.	
1.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·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	
2.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의 중·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	
3.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	
4.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	
5.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의 조	

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. 그 밖에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제5항의 간사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④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. 1.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. 고령화 및 저출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⑤위원회에 간사위원 2인을 두며, 간사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제4항제2호의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. 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	
제24조(전문위원회 등의 설치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.	<삭 제>	

②위원회의 업무 중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·연구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 ③전문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·연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④제1항의 사무국 및 제2항의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	
제25조(저출산·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의 설치) ①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의 효율적인 수립, 조정 및 평가 등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를 둔다. ②제1항의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<삭 제>	
제26조(관계행정기관의 협조) 위원회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	제26조(관계행정기관의 협조) 보건복지여성부장관은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, 조정 및	

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	평가하기 ----------. ----------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현재 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인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여성부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으로, 위원회 폐지에 따라 기구·인력 및 예산의 감소가 수반되므로 재정수반요인은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임.

3. 미첨부 사유

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인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조직·정원 및 예산의 감축이 예상되고, 위원회 폐지에 따른 행정비용도 극히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.

4. 작성자

국회 안상수 의원실 문정일 보좌관(연락처 788 - 2494)